

[사 건 명] 행심 2014-2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10.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구의 □□□와 같은 반이었다.

나. 2014. 9. 중순경 ○○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인 □□□가 같은 반인 청구인에게 전자담배 구입을 문의하였고, 전자담배 구입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은 선배인 청구의 ◆◆◆(○○중, 3학년)을 □□□에게 소개해주었다.

다. 2014. 10. 1. □□□가 분식점 ‘○○○○’에서 주인아주머니와 ◆◆◆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청구의 ●●●(○○중, 3학년)은 ◆◆◆에게 □□□의 말을 와전했다.

라. 와전된 얘기를 전달받은 청구인은 같은 날 저녁 9시경 □□□를 전화로 불러내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청구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와 함께 ○○아파트 등에서 □

- 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에게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 외이 둔상의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마.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0. 13.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출석정지 2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 바. 피청구인은 2014. 10. 13.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2일(학교장 사전조치),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13. 위 처분을 송달 받았다.
- 사. 청구인은 2014. 10. 27.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위 처분 중 전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2014. 11. 19.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4. 11.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아. 청구인은 2014. 12.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2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 중 전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2015. 1. 5. 인용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15. 1. 19. 2015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한 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승인으로 추인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2014. 10. 6.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일자를 ‘2014. 10. 20.’로 잘못 통지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피해학생과의 화해의 시간을 갖지 못했으며, 2014. 10. 13. 개최한 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 측은 자치위원회 참석 시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단순히 구타한 것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자치위원들은 청구인이 고의로 CCTV를 피하여 피해학생을 이끌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자치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게 당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자 친구와의 성적모욕, 피해학생으로 인한 헛소문으로 ◇◇◇에게 난처한 입장이 된 일 등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유리하게 자치위원회를 진행 한 것은 부당하다.
- 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음 처분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회를 박탈한 ‘전학’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1학기 말 정도부터 친해져서 함께 다니며 꽤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으로 처음에는 서먹하였으나 피해학생은 현재 청구인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며,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전자담배를 사도록 협박했다는 내용의 소문’으로 선배 ◇◇◇에게 오해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을 때린 이유로 전학조치를 받게 된 것인데, 이 소문을 퍼뜨린 ○○○과 ◇◇◇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피청구인은 중학교

3학년인 ◇◇◇이 중학교 1학년인 후배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해서 이 사안을 종결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ADHD관정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진행 중에 있고, ○○중학교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중인데, 청구인이 전학 조치를 받아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면 청구인은 정신적,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학교폭력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는 처벌이 아닌 선도가 그 목적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전학조치가 아닌 선도가 가능한 징계조치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ADHD를 앓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학이 최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피해학생은 청구인과 친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의 전학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목적이나 재발방지 목적이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을 배척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의 부모는 사건 초기 피해학생 측에 가해사실을 사과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측의 개인 정보이니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하지만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학생 아버지는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피청구인에게 적어주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측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청구인 측을 아예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고의로 피해학생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청구인에게 전달 하지 않고, 피해학생 측이 청구인을 오해하게 하여 청구인과 피해 학생간의 화해를 방해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이 유리창을 깨 것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일어난 일로 반성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친분을 표시하며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전학 조치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상담회기 기록지를 근거로 청구인이 폭행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지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기록된 것이고 그 이후 청구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2014. 10.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개최일자를 잘못 통지한 바 있으나, 즉시 수정하여 유선 및 문서(2014. 10. 8.)로 재 발송 통지하였다. 또한 CCTV관련 내용은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 부모님과 학생이 진술한 것이고, 위원들이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며, 대화의 자리는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인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였기에 마련할 수 없었다.
- 나. 이 사건 처분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피해 사실과 집단 폭행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 등이 피해학생에게 집단으로 행사한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4주의 진단결과가 나오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주도로 다른 학교 학생을 2명 이상 가담케 하였으며, 폭력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학생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사안 발생 이후 피해학생 부모님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버릇 없이 덤비는 행동을 하였으며, 출석정지 기간에도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며 유리창을 깨는 등 반성의 정도가 미약 하였는바 비록 1학년 학생 이지만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감안 하여 전학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사인을 처리 하는 기준인 폭력정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존중하여 내린 것이다.

다. ○○○의 행위는 ◇◇◇에게 피해학생을 협박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 사안으로 조치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일에 개입되어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지하는 교육 후 담임교사 에게 안내했다. ◇◇◇은 피해학생을 협박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었으므로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분할 수 없었 으나, 전자 담배를 소지한 사실로 별점부여와 부모님을 내방토록 하여 상담케 하는 조치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ADHD판정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나, 이번 집단 폭행 사안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교육환경 변화가 불가피 하였다. 청구인의 상담 회기 기록지를 보면, 청구인은 폭행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과 폭력으로 인해 추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2차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교육적 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측에 전해주라는 전화 번호를 전달 받은 적이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측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기관 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화 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지만 피해학생 측에서 강력히 거부하여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학생은 청구인이 강제전학을 가더라도 집이 가깝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자치위원회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 ◇◇◇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는 것 외에도 사안 조사 결과 1학년 학생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나. 판단

-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4. 10. 1. 저녁 9시경 학교 선배와 있었던 오해로 인해 피해학생을 전화로 불러내어 청구의 ♣♣♣, ◆◆◆와 함께 ○○아파트 등에서 피해학생의 안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학생에게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 외이 둔상의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에 대한 판단

- 1) 자치위원회 개최일 통지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4. 10. 6.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2014. 10. 20.'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지받았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같은 날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부장을 만나 학생부장으로부터 자치위원회가 '2014. 10. 13.' 개최된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2014. 10. 1. 오후 9시경 ♣♣♣, ◆◆◆와 함께 ○○아파트 운동장 등에서 피해학생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으며, 청구인과 ♣♣♣, ◆◆◆의 폭행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개최일이 '2014. 10. 13.'로 수정된 자치위원회의 개최 안내문을 2014. 10. 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님은 2014. 10. 13. 개최된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회의개최 사실 및 청구인의 학교폭력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미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절차적 하자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2)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중학생 1학년으로 아직 어리고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이 처음이며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로 인하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도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이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한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이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

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행사한 학교폭력은 청구인 외에 다른 학교 학생 2명이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한 집단폭행이고, 폭행의 결과 또한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 외이 둔상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추후 천공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경우 고막성형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향후 어지럼증 및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하다. 청구인이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에 화해를 한 사실도 없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 수시로 마주치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학생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및 청구인의 반성 정도, 청구인에 대한 선도 가능성, 청구인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화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